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대한다

2010년 4월 21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5월 14일 공포되었다. 이에 한국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 등록을 하려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의무화(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관련 조항)을 8월 15일부터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외국인 지문 강제 채취 제도가 대단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여, 특히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에 대항하여 싸워 온 재일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입장을 바탕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장에게 요망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개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로, 이번 개정안에 따른 생체정보 채취제도는 외국인을 범죄자 예비군으로 규정해 외국인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자, 생체정보 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낳는 것이라 하겠다.

작년 12월 7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불법입국자를 차단함과 동시에,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 개정안의 문제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4월 21일 국회본회의에서 “이번 출입국관리법은 지문날인 부활뿐 아니라 안면사진 등의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까지 마련,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반대 의견이 국회의원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개정안의 문제성을 적확하게 지적했다 하겠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검토 보고서에는, 입국시에 얻은 생체정보를 범죄 수사에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이번 개정법은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여기에 민감한 생체정보가 정부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드러난다 하겠다. 이전에 있던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지문날인제도에서조차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범죄 수사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 바,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입국시와 외국인 등록시, 이중에 걸쳐서 생체정보를 채취하도록 하는 국가는 현재는 한국 뿐이다. 전술한 검토보고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시에 의무적으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는 체류외국인에 대해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재차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에 관여한 전문위원이 직접 구두 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설명은 그 후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법개정은 외국인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인권 후진국”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제출된 원안에서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12년 7월 1일로 하였었지만, 결국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조항에 관해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금년 11월에 개최될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하였다.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이러한 대대적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법률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로 인식, 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국회심의를 의한 논의과정 자체를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심의 자체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은 3차례 (전체회의가 2차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차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법안에 걸린 시간은 첫번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09년 12월 7일)에서 5분만에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두번째 전체회의(2010년 4월 19일)에서는 다른 24건의 법안과 함께 22분만에 가결되었고,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도 다른 3건의 법안을 합친 심의와 투표가 35분만에 종료되었다. 검토보고서에서 외국인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실제로 법안성립에 대해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갖은 외국인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결된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너무나도 부당한 행위라 하겠다. 또한, 심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표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본회의의 투표결과가 출석한 국회의원 177명 중 찬성 148명, 반대 16명, 기권 13명이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의원이 찬성한 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재일동포사회에 있어서도 이번 제도 변경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특히, 재일동포사회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번 제도변경은 재일동포사회의 분열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가족인 한국국적 동포와 일본국적 동포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일본국적 동포만이 “본인 동일성 확인”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생체정보를 채취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재일동포사회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적”만을 지표로 차별/분단되어 버리는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보호라고 하는 관점은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당사자로서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다.

2006년에 열린 제1회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채택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의 비전으로 “외국인과 함께 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내세워, 2007년에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념에 대해,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관되게 차별·관리체제에 시달려 온 우리 재일동포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 만큼 이번 법개정은 다민족 다문화 공생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하겠다.

한편 이번 개정법과 연동하는 형태로 5월 3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하에 6월부터의 단속 강화책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관리강화만을 추진하며, 인권침해를 막기는 커녕 양산하는 측에 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 큰 위기감과 분노를 느낀다. 또한 한국에 사는 외국인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목소리에 진지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법개정에 의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 강제채취제도에 대해 재차 단호히 반대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외국인을 단순히 관리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대상으로써 외국인을 인정하고, 한국 국민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외국인에 있어서도 국민에 있어서도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6월 25일
재일코리아청년연합(KEY)